

1.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중수청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사건사무 전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하고, 공소청·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보호,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사무의 기본 원칙 및 사건 수리(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칙의 목적, 인권보호·적법절차 준수, 수사관의 직무와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고, 입건전조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를 정함

나. 수사의 기본 원칙과 임의수사(안 제15조부터 제41조까지)

불구속·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최소성, 수사기밀, 변호인 참여, 구제신청 고지, 진행상황 통지와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출석요구·임의동행·조서·영상녹화·자료수집·감정·실황조사·수사촉탁 절차를 정함

다. 체포·구속,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안 제42조부터 제93조까지)

체포 · 구속영장의 신청 · 집행 · 반환과 석방, 압수 · 수색 · 검증 및 전자정보 처리, 통신제한조치 · 통신사실 확인자료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증거보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정함
라. 사건의 종결과 사후통제(안 제94조부터 제116조까지)

송치 · 불송치 · 수사중지 · 이송의 결정 및 기록 송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 · 등사,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 시정조치 요구 사건의 처리 절차를 정함

마. 수사기관 간 협력(안 제117조부터 제128조까지)

협력의 원칙과 방식, 다른 수사기관과의 인지 통보 · 자료제출 · 이첩, 공소청과의 중요사건 협력 · 의견요청 · 소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통보 및 이첩 절차를 정함

바. 보호 · 통제 및 기록관리(안 제129조부터 제137조까지)

몰수 · 추정보전 신청, 피해자 · 공익신고자 · 범죄신고자 보호, 징계 · 직무배제 요구의 처리, 장부 · 범죄통계 · 수사서류 열람 · 복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수사심의 · 손실보상 및 보칙(안 제138조부터 제148조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 회의 구성 · 보고 · 운영 · 의결서 · 보존 · 통지 절차와 손실보상 청구 · 통지, 서식 및 다른 수사규칙의 준용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의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사건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 ①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수사청 소속 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중수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중수청법 제17조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③ 중수청법 제17조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8급 이하 수사관은 제2항의 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 ④ 이 규칙에서 정하는 수사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 관련 법령상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제2항의 수사관이 수행하며, 제3항의 수사관은 이를 보조한다.
- ⑤ 수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사건의 수리

제4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건전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4. 법 제197조의5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통보한 경우(다만, 고발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5.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가.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를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나. 수사관에 관한 사항

다. 수사관 또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라.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마.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바.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6.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입건전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피혐의자,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사건 수리서를 기록 앞에 첨부한 다음, 입건전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입건전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입건전조사사건의 접수번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부여되는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0000-000000”로 표시한다.

제6조(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 ① 수사관은 입건전조사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다른 수사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 나.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공람 후 종결 처리 후 공소청에 이첩한다)

타. 수사관이 조사·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공람 후 종결 처리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수사개시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수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입건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죤인지서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2항과 같이 입건전조사 사건을 입건하는 경우 입건전조사사건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④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불입건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⑤ 제1항제4호의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13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의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에 따라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피혐의자에 대한 불입건 결

정을 통지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한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한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한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한·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수사관이 진정한·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소청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공수처법 제24조제3

항 및 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다른 지방수사청이 수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6.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7. 불송치 결정 사건 또는 수사중지 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

령을 받고 그 이행절차를 개시하여 수사를 요구한 경우(이하 “국제

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사건”이라 한다)

9.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9조(수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에 따라 수리

하는 수사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

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

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과 같이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
발·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송서, 이첩서, 송치서 또는 불송치결정사
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수사지휘서 등에 사건번호
를 기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제4호·제5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중대범죄수사청, 다른 지방수사청, 사법경찰관등,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리한 수사사건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에 따라 수사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사사건의 접수번호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사건의 사건번호는 제8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0000-000000”로 표시한다.

제11조(수리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에 따라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 편철되었는지 여부
2.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 편철되지 않거나,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중수청법에 따라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 · 고발인 · 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 · 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제12조(수리에 관한 지휘 · 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절차가 종료된 수사사건이나 입건전조사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 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

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않거나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리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단위)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을 제4조 각 호 및 제8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제14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 및 입건전조사사건과 기록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수사관의 전보 등으로 수사사건 및 입건전조사사건과 기록 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3편 사건의 수사

제1장 총칙

제15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관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

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16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수사관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7조(수사기밀의 유지) 수사관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8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수사관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④ 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수사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수사관은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 ⑦ 수사관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⑧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조사를 방해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수사관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수사관의 회피) 수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구제신청의 고지) ①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제9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등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구제신청권 안내서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입건전조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및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피의자에게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고지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2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1.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날
2. 제1호의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1부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문자메시지로 한 경우에는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제22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의 소속 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이 고소인등에게 이의제기에 따른 조치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③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심사신청서에 따른다.
- ④ 제3항의 심사를 신청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⑤ 소속 청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1항의 이의제기가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및 해제 전산입력 절차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른다.
- ②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서류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기입한 후 전산입력 처리하고 동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③ 수사관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 2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피의자중지)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한다.

제2장 수사의 단서

제24조(고소·고발·자수) 수사관이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5조(필요적 입건사유)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제26조(출석요구) ①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

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요구서(피의자)를 발송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

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참고인)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석요구서(피혐의자)에 따른다.

제27조(임의동행)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8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관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피의자·피해자·참고인과 그 동석 대상자(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피의자·피해자·참고인과 그 신뢰관계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참고인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조서와 진술서) ①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이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 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31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

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피혐의자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같은 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미작성)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33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수사관은 법 제244조의2 및 제244조의6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시작한 후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

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재개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는 사실, 그 장소와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중단·재개 시각

④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상녹화·녹음과정 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는 녹음의 경우에 한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3.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중단하거나 재개한 경우 그 사유와 중단·재개 시각
4.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
5.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⑤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수사준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녹음 요청을 서면으로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진술녹음 요청서에 따른다.

제34조(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① 수사관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영상녹화 대상이 피혐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영상녹화물·녹음물의 제작 등) ① 수사관은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녹음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녹음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영상녹화물·녹음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녹음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녹음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녹음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

는 영상녹화·녹음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36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② 수사관의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① 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사관은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절 자료수집 등

제38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1. 사건을 인지한 경우

2.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③ 수사관은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

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제39조(감정의 위촉)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제40조(실황조사) 수사관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제41조(수사의 촉탁) ① 수사관이 소속된 청이 아닌 다른 청의 수사관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42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이 전산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47호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3조(체포영장의 재신청)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기재한다.

제44조(체포영장의 집행) ① 체포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다.

②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의 출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결과를 작성한다.

⑤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고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⑥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별지 제50호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 및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5조(체포의 통지) ①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법 제200조의 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및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및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46조(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7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35조에 따라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반환할 영장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반환하며, 반환할 영장의 사본과 영장반환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영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8조(긴급체포)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한 이후 12시간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 요청서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소속 청이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제44조제5항 및 제45조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 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49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은 검사가 제48조제2항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하여 불승인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통보서에 따라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석방통보서에 따라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

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0호서식의 피의자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50조(현행범인체포) ① 수사관이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한다.

③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의 규정은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 또는 인수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51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현행범인으로 체포 또는 인수한 피의자를 법 제213조의2의 준용을 받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

거나 발부받지 못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석방통보서에 따라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2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피의자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인수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52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수사관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13조의2가 준용하는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에서 제6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④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01조제7항,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요청에 따른 의견서에 따른다.

제53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2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지방공소청에 제출하고 지방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공소청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 및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기관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서면·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④ 수사관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지방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구속영장의 재신청, 구속영장의 집행, 구

속의 통지, 구속영장의 반환 등에 관해서는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체포영장 신청서”는 “구속영장 신청서”로, “체포영장신청부”는 “구속영장신청부”로,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결과”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구속영장 집행결과”로, 제44조제5항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44조제6항 중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제45조 중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로 각각 본다.

제55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제56조(체포·구속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방공소청으로부터 법원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 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때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방공소청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공소청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한다.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수사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지체 없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⑥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고,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서의 등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유치장 등 수용기관을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해당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8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수사관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

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79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결과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수사관이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감정유치장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⑤ 감정유치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체포영장”은 “감정유치장”으로 본다.

제59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①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어 직권 또는 피의자, 변호인과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체포·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취소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인수 피의자의 경우 현행범인체포·인수서,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상단에 체포 또는 구속취소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

고,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0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수사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61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

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62조(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 ① 수사관이 압수·수색 또는 검
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9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

2.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
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0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
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②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경
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63조(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
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제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는 경우: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을 제시(단, 이 경우 영장의 출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③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④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⑤ 수사관은 영장의 집행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 별지 제91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92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93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참여자(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단, 압수조서의 작성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거나 수색만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94호서식의 수색조서 및 별지 제95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색증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

3. 검증을 한 경우: 별지 제9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

⑥ 제5항제1호의 압수목록 교부서 및 제2호의 수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교부한다.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

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⑦ 수사관은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부터 제98호서식까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하고, 압수물이 있는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제64조(준용규정)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경우 영장의 재신청 및 반환 등에 관해서는 제43조,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압수·수색·검증”으로 “체포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체포영장 신청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로, “체포영장신청부”는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로, 제43조 중 “수사준칙 제31조”는 “수사준칙 제31조를 준용하는 제39조”로, 제47조 중 “수사준칙 제35조”는 “수사준칙 제35조를 준용하는 제39조”로, “체포영장 집행 결과”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로 각각 본다.

제65조(임의 제출 등) ①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유류물은 발견 일시·장소·경위 및 유류물임을 확인한 사정을 압수조서에 기록하고, 임의제출물은 제출자에게 별지 제99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수를 한 경우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수사관이 법 제216조 및 제2

17조의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제63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수사관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이 경우 영장의 재발급 및 신청부의 작성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를 하였으나, 제2항의 영장을 발부받지 못 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의 집행 및 영장사본의 교부 등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67조(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열람·복사 등) ① 법 제220조의2 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상녹화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법 제220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2호서식의 열람·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분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

한다.

제68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수사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재의견) 요청서(환부·가환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04호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압수물 처분 의견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해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재의견) 요청서(환부·가환부)에 그 내용과 이유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제3항의 의견요청에 대해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검사가 재의견을 제시한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0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는다.

제69조(압수물의 위탁보관)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한 검사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10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는다.

제70조(압수물의 폐기)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한 검사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

를 기재한다.

제71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한 검사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제72조(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① 수사관은 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한 검사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3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

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 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전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제4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하고, 별지 제116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기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① 수사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의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요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1.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요청부: 제2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75조(동의에 의한 금융 거래정보등의 요구) 수사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의인에게 별지 제123호서식의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금융 거래정보등을 요구한다.

제76조(금융 거래정보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수사관은 금융 거래정보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였거나 동의에 의해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회사등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제77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4에 따른 감정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교부한다.

③ 수사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12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집행결과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감정처분허가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⑤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2조제

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체포영장”은 “감정처분허가장”으로 본다.

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제7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또는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9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및 제6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조치를 중지하고 취득자료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3호서식의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허가를 청구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분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제2항에 따른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제3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을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부에, 제4항에 따른 자료폐기결과보고서의 송부를 한 경우에는 자료폐기결과보고서 발송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수사관은 별지 제13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와 별지 제1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④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13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통신제

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의 승인요청을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2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3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에, 제2항에 따라 사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4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를 작성한다.

③ 수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1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5조(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

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을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사유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유 통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6조(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7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88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수사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이 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제89조(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①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 또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②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집행된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받아 종결한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제1항의 보고를 하고, 사건을 이송한 관서로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그 밖의 수사

제90조(증거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은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거보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91조(증인신문의 신청) ① 수사관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인신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인신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92조(영장심의위원회) 수사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를 신청한다.

제93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제1장 수사종결

제1절 총칙

제94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제95조(결정의 단위) ①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① 수사관은 하나의 사건에 공소청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및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송치 및 송부된 사건을 공소제기(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 중 타 기관 이송 및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건송치 결정을 포함한다)한 이후, 수사관

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중지 사건을 재개수사하여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 관계 서류와 함께 제2항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본 중 관련 부분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나 수사중지 사건의 재개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 결정한 부분을 모두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본 전체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97조(승인 등 절차) 수사관은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8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송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63호서식부터 제165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66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불송치 결정서 및 제106조제1항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함께 송부하며, 불송치 결정서에는 수사준칙 제53조제3항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7호서식 또는 제168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⑦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고소인등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0호서식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절 송치

제99조(공소청송치 결정)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의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 기록목록은 별지 제6호서식,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제100조(송치 서류) ①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7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 목록
4.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송부하는 경우 이를 봉인하고, 그 종류와 개수 및 봉인정보를 별지 제173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한다.

제101조(추가송부)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4호서식의 추가송부서를 첨부한다.

제102조(법원송치 결정)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제3절 불송치

제103조(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없음(수사준칙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
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
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이 되는 등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
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
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
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
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의자와의 관
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04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5호서식에 따르며,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76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 목록
4. 전자화대상문서 목록
5. 불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③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명의인 및 불송치 결정서 작성인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사준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불송치사건의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봉인·표시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3호서식의 사건송치서’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로 본다.

제10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106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77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청의 장이 이의신청의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이의신청 기간 연장 허가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등에게 통지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 가 보관하는 경우(제96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제107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①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사관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목적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별지 제181호서식의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2항과 같이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분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4절 수사중지

제108조(수사중지 결정)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
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사관은 수사중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수사중지 결
정을 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를 확인하여 시한부 수사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하
여야 한다.

제109조(수사중지 결정의 유의사항) ① 수사관은 제108조제1항제1호 가
목의 사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소재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에 대해 지
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
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한

다.

③ 피의자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수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수사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를 피의자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제110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부 등) ①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수사중지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부에 기록한다.

제11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85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수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

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주임수사관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나. 다른 지방수사청 이송 지시

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

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제5절 이송

제113조(이송 결정) ① 수사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기관에 이송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수사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지방수사청 또

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기관에 송부한다.

제2장 보완수사요구 사건

제114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①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보완수사결과 통보 전에 종합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④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검사에게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4호서식의 추가송부서를 첨부한다.

⑥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4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4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⑦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3장 재수사요구 사건

제115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5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8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계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6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제4장 시정조치요구 사건

제116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2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한다.

⑤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99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의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13조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다. 이때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한다.

⑥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6항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14조에 따른다.

제5편 협력

제1장 총칙

제117조(협력의 원칙과 방식) ① 수사관은 법 제195조, 중수청법 제43조 제1항,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및 검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이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및 검사에게 협력의 요청·요구·신청 등(이하 “협력요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사 현장에서 협력요청등을 하는 경우 등 제2항의 방식으로 협력요청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협력요청등을 할 수 있다.

제2장 다른 수사기관

제1절 인지 통보 사건

제118조(인지 통보 사건의 접수 및 인지 통보 요청) ① 사건사무담당직

원은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인지 사실의 통보(이하 “인지 통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인지 통보 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수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지 통보 요청은 별지 제198호서식의 인지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제119조(인지 통보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수사개시 회신)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지 통보를 한 수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인지 통보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지 통보를 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 별지 제200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서에 따른다.

③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의 회신기간의 연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제2절 이첩 요청과 이첩

제120조(이첩 요청) ① 중수청법 제43조제3항 및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02호서식의 이첩 요청서에 따른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첩 요청 검토를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이첩 요청 검토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제121조(사건 이첩) 중수청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제3장 공소청

제122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의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6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123조(검사와의 협의)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122조의 의견 제시·교환에 관하여 검사와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208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4조(수사관의 의견요청)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의견요청서 및 필요한 관계 서류·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2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①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 또는 제211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126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

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2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공수처에 이첩한다.

제128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관련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재한다.

제6편 몰수·추징 보전 등

제12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추징보전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30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216호서식의 추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추정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추정보전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7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3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4조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수사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2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8편 징계요구·직무배제·교제임용요구의 처리

제133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197조의2제7항 및 수사준칙 제61조, 법 제197조의3제7항 및 수사준칙 제46조 또는 법 제245조의8제8항 및 수사준칙 제64조의2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소속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계 조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34조(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법 제245조의8제8항,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소속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9편 기타

제135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을 갖추어 두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철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저장·관리·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136조(범죄통계원표)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제137조(수사서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및 처리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수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열람·복사 대상 서류의 사본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이때 개인정보·수사방법 등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를 불허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불허가 통지서에 따른다.

1.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2호 사유에 준하여 열람·복사를 불허가·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4항과 같이 열람·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분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10편 수사심의위원회

제138조(위원장 호선과 회의의 구성) ①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설 위원장을 두지 않고 회의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② 간사는 매 회의마다 전체 위원 중 위원장 호선에 참여할 위원 15명 (이하 이 조에서 “최초 정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수의 예비위원을 무작위 추첨한다. 예비위원 중 추첨순서가 가장 빠른 사람을 제1예비위원이라 한다.

③ 최초 정위원 11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호선한다. 호선에 참여한 최초 정위원 과반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④ 최초 정위원 중 1명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면 추첨 차례가 가장 빠른 예비위원이 그 사람의 위원 자리를 승계하여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회의를 구성한다.

⑤ 위원장의 지위는 호선된 때부터 해당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9조(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보고는 수사심의담당관이 조사결과서를 위원회 명의 전자문서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중수청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등록과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문서번호와 등록일시를 기록하고, 최초 정위원과 제

1예비위원이 선정될 때까지 조사결과서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선정된 최초 정위원 15명과 제1예비위원에게 조사결과서를 회의 전에 보안이 적용된 방법으로 배부하고, 회의에서는 위원장 호선 직후 위원장에게 공식접수 사실과 조사결과를 보고한 다음 출석위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수사심의신청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서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따른다.

제141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분류, 회의 소집을 위한 무작위 추첨, 위원장 호선, 자료의 제출·배부 및 심의결과의 처리에 관한 직원의 사무처리 세부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② 회의의 진행, 발언, 표결 및 소위원회·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수청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2조(의결서 및 심의서류)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2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결서 원본은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포함하여 보존하고, 사건기록 편철·공소청 또는 법원 송부용 사본에는 위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3조(보존기간) ① 사건과 관련된 신청심의·이의제기심의 또는 회

부심의의 의결서와 심의 관련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보존한다.

② 별도 사건기록이 없는 이의제기심의, 정책자문심의, 회부심의 또는 직무관련심의의 의결서·조사결과서·회의진행기록서는 10년, 그 밖의 운영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보다 다른 법령이나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 긴 기간에 따른다.

제144조(수사심의 결과의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2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일시·방법·내용 및 수령 여부를 전자시스템이나 사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5조(서약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224호서식에 따른다.

제11편 손실보상

제146조(손실보상의 청구)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225호서식에 따른다.

제147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226호서식 및 별지 제227호서식에 따른다.

제12편 보칙

제148조(적용법령과 준용)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의 접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라는 중대범죄수사청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권한 등에 대해 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중 녹음에 관한 부분
2. 제35조 중 녹음물에 관한 부분
3. 제67조
4. 제100조제2항 및 제104조제4항 중 녹음물에 관한 부분
5.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상녹화·녹음과정 확인서 중 녹음에 관한 부분, 제38호서식의 진술녹음 요청서, 제101호서식의 영상녹화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와 제102호서식의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 제17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제176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중 녹음물에 관한 부분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리하는 사건과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되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수사준칙 일부개정령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는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구제신청 절차 안내 및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제67조는 2027년 8월 5일 이후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중 녹음에 관한 부분, 제35조 중 녹음물에 관한 부분과 제100조제2항 및 제104조제4항 중 녹음물 송부에 관한 부분은 2027년 8월 5일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결정 등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사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인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송사건의 수리 및 사건번호) ①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으로 이송되는 사건은 실제로 사건기록을 인수한 날 제8조에 따라 수리한다.

② 새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종전 검찰청 또는 수사기관의 사건번호를 시스템·기록표지·사건부에 연계 사건번호로 함께 기록하고 삭제하거나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종전 접수일, 고소·고발 수리일, 수사개시일, 송치·송부일, 신병·구속기간, 공소시효, 영장·통신조치, 압수물·전자정보, 피해자 보호조치와 처리기한을 확인·기록한다.

④ 기록·전자정보·압수물·신병 및 집행 중 처분을 인계목록과 대조하고 누락·불일치 시 지체 없이 이송기관에 보완을 요청한다.

제12조(종전 수사행위 등의 효력) ① 이 규칙의 시행 또는 사건의 이송은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접수, 수사행위, 영장의 신청·청구·발부·집행, 통신제한조치, 압수물 처분·보관, 통지 및 서류 작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의 처분은 같은 항에 따른다.

③ 제1항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새로운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기간은 종전 기산일부터 계속 계산하며, 이송·수리·새 사건번호·배당·재배당을 이유로 새로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의 행위를 적용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의 해당 적용례에 따른다.

③ 기산점인 수사개시일, 고소·고발 수리일, 통지일, 송부·접수일, 신청일 및 강제처분 실시일을 시스템과 기록에 명확히 기록한다.

④ 내부 처리기간은 법률상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산점을 변경하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종전 서류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된 사건기록, 장부 및 서식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그 효력은 유지된다.

②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행위, 결정, 통지 또는 권리안내에는 이 규칙의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종전 서류에 이 규칙이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종전 서류에 새 권리·불복절차 안내 등 필수사항이 없으면 이 규칙의 서식 또는 별도 서면으로 보완한다.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건과장	20 . . . 수리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사건번호	20 - 제 호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목 : 입건전조사사건 수리						
피 혐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혐 의 요 지						
출 처						
관 련 사 건						
비 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 - 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접수번호 :

제 목 : 범죄인지서

사건번호 :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등록기준지 :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호

0000.00.00

접수번호

제 목 불입건결정서

아래와 같이 불입건 결정합니다.

I . 조사대상자

II . 혐의 죄명

III . 결과

IV . 혐의내용과 불입건 이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 - 00000 호

0000.00.00

제 목 : 불입건 편철서

조사대상자	성 명	성별	혐 의 죄 명	
혐 의 죄 명				
결 과				
대 상 사 건	접 수 일	접수번호	단 서	피 해 자
책임수사팀장				
정 수 사 관				
부 수 사 관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압수물 총 목록

[illegible]210mm × 297mm(백상지 80g/m²)

기 록 목 록

[illegible]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전자화대상문서목록

[illegible]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 - 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접 수 번 호	
죄 명			
결 정 종 류	1. 입건 전 조사종결 () 2. 입건 전 조사중지 () 3. 이 송 () : (☎ :) 4. 공람 후 종결 ()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에게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에게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이의제기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수사관이 진정인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밖에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진정인등은 수사관이 소속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가 있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장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 - 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접 수 번 호	
죄 명			
결 정 종 류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가 있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 - 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사건수리 통지서

아래 사람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수리하였으므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죄 명			
수리일시			
사건번호			

범죄사실의 요지

비 고	
-----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기 록 인 계 인 수 서							
인 계 일 자		년 월 일		총 건 수		건	
수 사 중 기 록		(입건전)					건
		(입건 후)					건
검 사 요 구 사 건		(보완수사요구)					건
		(재수사)					건
		(시정사건)					건
기 타 사 건		(내사 등)					건
인 계 자		수사관 ①					
인 수 자		수사관 ①					
인 계 기 록 내 역							
사건 (접수)번호		피 의 자	사건명	기 록 권 수	재 배 당 수 사 관		비고
구분	번호				성명	날인	
접수							
수리							

안 내 확 인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연령 세)

주 거 :

본인은 0000.00.00. 00:00경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위 확인인

위 고소인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였음(위 고소인들에게 위와 같이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 - 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구제신청권 안내서

접 수 일 시	접 수 번 호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은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의 대상, 신청 절차 및 향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관할 공소청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공소청	☎

※ 기타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에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에우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수사 이의제기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수사관이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밖에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등은 수사관이 소속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고 지 확 인 서

성 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연령 세)

주 거 : 주거

본인은 0000.00.00. 00:00경 수사장소에서 신문을 받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였음(위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0000.00.00.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 - 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주 요 진 행 상 황			
담 당 팀 장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에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에우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수사 이의제기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수사관이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밖에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등은 수사관이 소속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가 있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 고소안·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장

수사 중 이의제기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법정대리인		
대상사건	죄 명		
	수사관서	사건번호	
이의제기 사유 (해당란 체크)	☐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			
첨부서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 하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

귀하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사 건 번 호		
조 치 결 과	1. 수사공무원 교체 () : 교체 수사관 00팀 00 000 (☎ :) 2. 수사경과 및 향후 수사계획의 제시 () 3. 그 밖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 4. 이의제기 사유 없음(별도 조치 없음) ()	
조 치 내 용		
참 고 사 항	○ 이 통지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에 따라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0-000-0000)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심 사 신 청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사건	죄 명		
	원수사관서	사건번호	
이의제기 처리 내역	이의제기 접수일		
	조치 결과 통지일		
	통지받은 조치 내용 요지		
심사신청 사유 (해당란 체크)	☐ 통지 기한(14일) 내에 조치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통지받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			
첨부서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귀하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사 건 번 호		
원수사관서		
심 사 결 과	1. 인용 () : 원수사관서에 (재)조치를 요구함 2. 기각 () : 원수사관서의 조치가 적정함 3. 각하 ()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 사 내 용		
조치사항 (인용 시 기재)		

중대범죄수사청장

일련번호 (제 호)

○ 내국인 수배
○ 외국인·재외동포 수배

지문
번호

지명수배 · 지명통보자														수배관서 : 청	
전산입력 요구서														수배번호 : 년 호	
														사건번호 : 년 호	
														즉심구분 :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했음	안했음	했음	안했음	했음	안했음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죄명	수배년월 일	범죄일자	공소시효 만료일	수배종별 (해당란 ○표)		인상·방언 신체특징	공범 성명연령				
			남					A지명수배자, B지명수배자 C지명통보자							
			여												
영문 성명	First				여권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Middle														
	Last														
영장구분 (해당란 ○표)		발부일자		유효기간		영장번호		공소시효정지자 무적자		범행장소					
1. 구속 2. 체포 3. 긴급체포 4. 형집행정지 5. 구인장		년 월 일		년 월 일						피해자		피해정도			
개요						해제 사유 < 해당란 ○ 표 >									
						01		02	03	04	05	06	07		
						검거		자수	공소시효만료	오류입력	죄안됨	공소권무	혐의무		
						일자	관서	직급	성명						
								08	09	10	11	12			
								가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수배종별변경	기타 (각하 등)			

210mm × 297mm(백상지 80g/㎡)

회 차	영장 발부일자	유 효 기 간	영 장 번 호	영 장 종 류	사 진			
※ 영장구분 중 4. 형집행장과 5. 구인장은 B지명수배자만 해당함	※ 참 고	구분 담당		작 성 자 (사건담당자)	수배 담당자	책 임 자		
		수 배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계급					
			성명					
		해 제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계급								
성명								

210mm × 297mm(백상지 80g/㎡)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소재발견 통보서(피의자중지)

귀청에서 수사중지(피의자중지)한 사건의 소재불명 피의자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전	화	(자택)		(직장)	
대 상 사 건	죄	명				
	사	건	번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귀청에서 수사중지(참고인중지)한 사건의 소재불명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발견 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참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화	(주택)		(직장)		
대상사건	피의자					
	죄명					
	사건번호					
발견경위						
비고						
첨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진 술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소속관서명 부
서명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와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0000.00.00.

수사관

출 석 요 구 서 (피 의 자)

제 0000-00000 호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 (접수번호 : 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0000.00.00. 00:00에 00과00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 구비서류 등 >

- 1.
- 2.
- 3.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위 구비서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
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팀(☎ 연락처)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
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0000.00.00.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수사관

출 석 요 구 서 (참 고 인)

제 0000-00000 호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피의/입건전조사사건 (접수번호 : 0000-00000)의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0000.00.00. 00:00에 00과00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 구비서류 등 >

- 1.
- 2.
-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소속팀(☎ 연락처)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등으로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 편리한 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000.00.00.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수사관

출 석 요 구 서 (피 혐 의 자)

제 0000-00000 호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 (접수번호 : 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
이 있으니 0000.00.00. 00:00에 00과00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 구비서류 등 >

- 1.
- 2.
- 3.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위 구비서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
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팀(☎ 연락처)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
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수사관

임 의 동 행 동 의 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 · 장소	일 시 : 장 소 :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사건 개요)	
동행대상자	성 명 :
담당 수사관	소 속 : 성 명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위 본인

동 석 신 청 서

(사건관계인)

수 신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성명

귀청 접수번호 제 0000-00000 호 피의자 000외 0명에 대한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고발인/참고인/피해자) 000을/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건관계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사건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화번호	
신뢰 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0000.00.00.

신청인

인

동 석 신 청 서

[피 (험) 의 자]

수 신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성명

귀청 접수번호 제 0000-00000 호 피(혐)의자 000외 0명에 대한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피(혐)의자 000을/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혐)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신뢰 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혐)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0000.00.00.

신청인

①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조사장소에서 수사관 000은 수사관 000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수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수사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인

0000.00.00.

수사관 ○ ○ ○ 인

수사관 ○ ○ ○ (인)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0회)

피 의 자 :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조사장소에서 수사관 000은 수사관 000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수사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진술조서 (제 0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
관/리 000은 진술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

답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인

0000.00.00.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인)

인

진 술 서 (간이공통)

성 명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 장 전 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죄명**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로(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20 . . .

작성자

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0000. 00. 00.

진 술 자

인

수 사 과 정 확 인 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 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0000.00.00 수사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 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수사관 ① ②	

수사 과정 확인서 (조서미작성)

대 상 자	성 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장소를 떠난 시각	
3. 조서 미작성 이유	
4. 조사 외 실시한 활동	
5. 참여 변호인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0000.00.00

수사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인)

: 수사관 (인)

진 술 녹 음 요 청 서

수 신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성명

귀청 접수번호 제 0000-00000 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또는 조사)시 형
사소송법 제244조의6에 따른 피의자 진술의 녹음을 요청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의자와의 관계	성 명 (피의자 본인 신청인 경우는 생략)
	연 락 처	
피의자	성 명 (피의자 본인 신청인 경우는 생략)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별첨 필요

0000. 00. 00.

신청인 : (인)

영 상 녹 화 동 의 서

진 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상기인은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혐의자.참고인.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됨을 고지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00.00.

성 명 :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 ○ 지방 중 대 범죄 수사 청

(00000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전화(Telephone) : 전화번호

팩스(Fax) : 팩스번호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To) : ○○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담당 귀중

제 목(Subject) : 영사기관 체포 · 구속 통보서 (Arrest(Detention) Notification)

1. 피의자(Personal details of the arrested)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국적(Nationality) :

2. 체포 · 구속 일시 및 장소 (Date & Place of arrest)

체포 · 구속 일시 :

체포 · 구속 장소 :

3. 사건개요(Details of the case)

4. 조치(Actions taken by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00000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수사관(Investigator in charge) 성명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감정위촉서

피의자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감 정 대 상 (종류 품명)	
위 촉 사 항	
비 고	※ 감정처분허가장이 첨부된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실 황 조 사 서

수사관 성명은 0000.00.00.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황을 조사하다.

실 황 조 사 일 시 · 장 소	
실 황 조 사 목 적	
참 여 인	
실 황 조 사 경 위 및 결 과	

이 실황조사는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0000.00.00.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성명 (인)

수사관 성명 (인)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촉탁서(대상자)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접수번호	
죄 명				
촉 탁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촉 탁 사 항				
촉 탁 내 용				
사 건 담 당 자				
비 고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회답서(대상자)

00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회 답 내 용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체포영장 신청서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인치장소에 인치하고 구금장소에 구금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비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영장재발급 신청서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0000-000000호

0000.00.00.

수 신: 법원의 장 발 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제 목: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 신청인: 수사관 (전자서명완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 영장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재발급의 허가를 구하는 대 상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발 부 법 원	
	영 장 을 발부한 판사	
	영 장 번 호	
	공 판 영 장 여 부	
	사 건 번 호	
	영장 등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의 출력자, 출력일시, 출력시스템에 관한 정보		
재발급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첨 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체포영장 집행 결과

【통 상】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죄 명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거			

위 체포영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체 포 일 시	20 . . . :	체 포 장 소	
인 치 일 시		인 치 장 소	
구 금 일 시		구 금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권리 고지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본인은 경 에서 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본인은 0000. 00. 00. ():()경 ()에서 ()영장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행위 및 명예훼손, 증거인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0000. 00. 00.

위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위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음

☐ 위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 피의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음

0000. 00. 00.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서명 또는 인)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000 귀하

제 목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

1.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2. 위 사람을 0000.00.00. 죄명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인치구금장소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담 당 자		소속 및 연락처	
-------	--	----------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피의자 석방서(체포영장)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체포자(체포영장)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체포 영장 번호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체포영장)

다음 피의자(체포영장)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체 포 영 장 번 호		-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영장반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영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영 장 반 환 사 유		

첨 부 : 영 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긴 급 체 포 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
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0000.00.00.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다음 사람에 대한 00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범 죄 사 실				
소 명 자 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 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긴 급 체 포 피 의 자 구 금 서

제 0000-000000 호

피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구금함

0000.00.00.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구 금 을 집 행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다음 피체포자를 긴급체포 불승인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사유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불 승 인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긴급체포)

다음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한일시		
긴급체포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피의자 석방서(긴급체포)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체포자(긴급체포)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긴급체포한일시		
긴급체포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석방일시		
석방장소		
석방사유		
석방자의 권직 및 성명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현행범인체포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0000.00.00.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210mm × 297mm(백상지 80g/㎡)

현행범인인수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호인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0000.00.00.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체포한일시		
체포한장소		
체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범죄사실 및 체포의사유		
인수한일시		
인수한장소		
인치한일시		
인치한장소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현행범인구금서

제 0000-000000 호

피체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번호인		

「형사소송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인수한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구금함.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구금한일시	
구금한장소	
구금을집행한자의 관직및성명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현행범인)

다음 피체포자(현행범인)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체포자(현행범인)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권직 및 성명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하여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긴급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여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번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서

아래 사건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검사명)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검사가 요구한 조치		
수사관 의견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요청에 따른 의견서

아래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검사(검사명)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검사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수사관의 의견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의견서

아래 사건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구속이 필요한 사유		
공범의 분리심문 · 기타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사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구속영장 집행 결과

【체포된 피의자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거			

위 구속영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구 금 일 시		구 금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지방공소청장 (검사: ○○○)

제 목 :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

으로부터 다음 사람에 대한 동원 제 호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통지가 있으므로 동사건 심리에 필요한 수
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피 체 포 · 구 속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체포·구속 일자		
지정된 심문기일		

- 첨부 1. 사건기록 1권
2. 증거물(있음/없음)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지방공소청장 (검사: ○○○)

제 목 : 의견서

아래 사건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제5항 각 호 사유의 존부		
부가 필요한 석방조건 및 그 사유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사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제 목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견 등 금지를 결정합니다.

[대상사건]

사건번호 :

죄 명 :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직 업 :

체포·구속일자 :

접견등금지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일)

[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제 목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결정한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 조치를 취소합니다.

[대상사건]

사건번호 :

죄 명 :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직 업 :

체포·구속일자 :

접견등금지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일)

[취소 대상 ‘접견 등 금지 조치’ 내용]

[취 소 사 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감정유치장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	성 명						
	직 업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감정유치장 집행 결과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죄 명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감정유치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집 행 장 소			
유치한 일시	20 . . :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담당 검사)

제 목 : 감정유치 해제 신청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유치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감 정 유 치 처 분 연 월 일		
감 정 유 치 목 적		
감 정 유 치 기 간		
해제가 필 요 한 사 유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체포·구속) 취소 결정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포·구속) 일시		
(체포·구속) 장소		
(체포·구속) 사유		
(체포·구속) 취소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구속취소)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구 취 소 사 유		
석방자의 권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구 속 집 행 정 지 결 정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아래와 같이 정지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 행정 지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제 한 주 거 등	
석 방 자 의 관 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지방공소청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구속집행정지 통보서

아래와 같이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 행정 지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영 장 번 호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구 속 집 행 정 지 취 소 결 정 서

제 0000-00000 호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집행정지결정일		
취 소 사 유		
영 장 번 호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지방공소청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구속집행정지 취소 통보서

아래와 같이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집행정지 결정일		
취 소 사유		
영 장 번 호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피의자 석방서(구속후석방)

제 0000-00000 호

0000.00.00.

다음 피의자(구속후석방)를 아래와 같이 석방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구속일시		
구속장소		
구속의 사유		
석방일시		
석방장소		
석방사유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석방 통보서(구속후석방)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자의 권직 및 성명		
영 장 번 호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또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비 고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러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 피(혐)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비 고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사관

압 수 조 서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00:00 ○에서
수사관 000은 수사관 000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참 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0000.00.00.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작성자 ①

수사관 작성자 ①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수사관의견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mm × 297mm(백상지 80g/㎡)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자

제 목 : 압수목록 교부서

○○○○에 대한 ○○○○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 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수 색 조 서

000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수사관 000은 수사관 000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참 여 인	
수 색 한 신 체 개 소 · 물 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 0000. 00. 00. 00:00
	종료 : 0000. 00. 00. 00:00

0000.00.00.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작성자 ㉠

수사관 작성자 ㉠

수 색 증 명 서

제0000-00000호

0000.00.00.

수 신 :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00000에서 00000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검 증 조 서

수사관 성명은 0000.00.00. 수사관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000외 0명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하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이 검증은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0000.00.00.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성명 (인)

수사관 성명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일반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주: 1.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계좌 추적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집 행 장 소	
통 보 유 예	유 예 기 간		
	유 예 사 유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주: 1.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임 의 제 출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본인은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며,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

제 출 자 : 제 출 자 ①

[제출물건]

연번	품 종	수량	제출자의 처분의견 (반환의사 유무)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 직 · 성 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 급 수 색 · 검 증 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긴 급 압 수 한 물 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 수색·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 행 을 한 사 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영상녹화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4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 과의 관계	☐ 피의자 본인 ☐ 피의자의 변호인 ☐ 그 외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자	
	사건번호	피의자 외 명	
사 건	죄 명		
	압수·수색·검증이 집행된 일시 및 장소		
신청내용			
신청사유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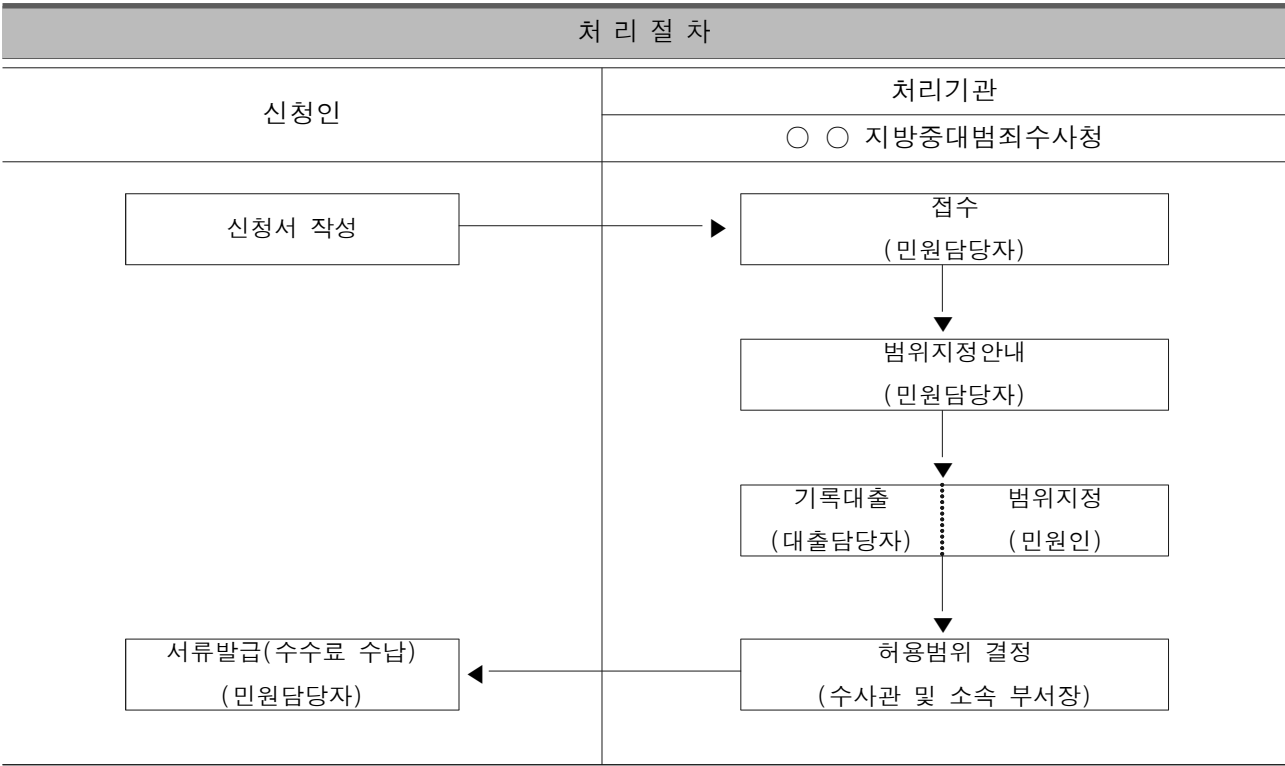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결정	수사관				소속 부서장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목적제한 또는 조건부가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열람·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불허가·조건부가·사용목적제한 사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 및 제59조의2 제2항)

①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③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④	피의자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
⑥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
⑦	그 밖의 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사유

결정 내용	
----------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2항, 제245조의12 및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허가·조건부가 또는 사용목적 제한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환부·가환부)

000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가환부 을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가환부 받을 사람	비 고
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재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귀 관서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다음 압수물건을 청구인에게 환부·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 인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	량	비고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장 귀 하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제 목 : 검사가 재의견을 제시한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5항에 따라 검사가 재의견을 제시한 압수물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지합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처분결과	비 고

재의견 요청 내용	
재의견 내용	
처분 사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압수물 환부 · 가환부 영수증

[영 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귀 관서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다음 압수물건을 환부 · 가환부 받았습니
다.

영 수 인 : ㉠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기록면수	연번	품	종	수량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압수물 보관 서약서

[서 약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서 약 인 :

인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량	보관장소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압수물 폐기 조서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수사관 작성자는 수사관 000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 호	품 종	수 량	이 유	비 고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작성자 (인)

수사관 작성자 (인)

압수물 폐기 동의서

[동 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다음 압수물건을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동 의 인 :

인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량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대가보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에 부패(멸실 등)의 우려가 있어 대가보관 을 요청합니다.

연번	품종	수량	비고
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재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수사관 성명은 수사관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보관하다.

대가보관금액			보관자		
번호	품종	수량	매각대금	이유	매수자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성명 (인)

수사관 성명 (인)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재의견)요청서(유가증권 원형보존)

다음 유가증권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을 요청합니다.

연번	유가증권종류	유가증권번호	비 고
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재의견 요청의 내용과 이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전자정보 확인서

※ 정보저장매체등별 작성

압수근거	☐ 압수·수색·검증영장 : 영장번호() ☐ 임의제출 ☐ 기타()			
일시·장소				
정보저장매체등	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비고	
전자정보(압수물)	파일명		해시종류	
	해시값			
	※ 전자정보 상세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함			
상세목록	교부방법	☐ 출력 ☐ 복사 ☐ 전송(e-mail :)		
	파일명		해시종류	
	해시값			
피압수자(제출자)	구분 : ☐ 소지자, ☐ 소유자, ☐ 기타()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참여자	피압수자(제출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가. 본인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습니다. 1.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확인 1.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이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 1. (전자정보 복제시)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 해시값, 해시종류 확인 1.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 후, 탐색·출력·복제과정에 참여한 경우) 본인 이상여부, 원본의 해시값과 복제본의 해시값 동일 여부 나. 본인은 전자정보 압수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피압수자(제출자) : (날인 또는 서명)				
☐ 위 피압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와 관련된 위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음 (교부하였으나 _____의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또는 복제본을 반출 후, 탐색·출력·복제과정에 참여인의 참여가 없어 《☐ 사진 촬영 ☐ 동영상 촬영 ☐ 기타()》조치와 함께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 20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수사관 (인)				

전자정보 상세목록

※ 전자정보 상세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 · 폐기함

총 개 파일

1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2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3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4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5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6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7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8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9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10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11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12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13	파 일 명	
	해시값(해시종류)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전자정보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피압수자 ○○○○에 대한 ○○○○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였으므로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210mm × 297mm(백상지 80g/㎡)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0000. 00. 00.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수사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을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해 필요
대 상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
필 요 한 정 보 의 범 위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대 상 전 자 정 보 와 의 관 련 성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부터 XX일(60일 이내)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수사관의 이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수사관

㉠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합니다.

보 전 된 전 자 정 보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연 장 요 청 기 간	집행일부터 xx일
보 전 기 간 연 장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000(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0000. 00. 00.

수 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 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목: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수사관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을 요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하나 미리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대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필 요 한 정 보 의 범 위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대 상 전 자 정 보 와 의 관 련 성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부터 XX일(6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수사관의 이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호

0000. 00. 00.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목: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수사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건	20XX-XXX호 000위반
승인 대상 보전요청	20XX보전XX호
긴급보전요청 일시	20XX. X. X. 00:00
긴급보전요청한 전자정보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범죄사실 및 긴급보전요청 사유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긴급보전요청한 자의 직급 및 성명	

【별지 1】

긴급보전요청한 전자정보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요청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범죄사실 및 긴급보전요청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긴급보전요청 사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하나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미리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진행번호: 20XX보전취소XX호

0000. 00. 00.

수 신: 공소청의 장

발 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수사관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사 유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필요성 소멸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진행번호: 20XX보전취소XX호

0000. 00. 00.

수 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 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목: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

수사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 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 니다.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귀 회사가 위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0000.00.00

동의인 : (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문서번호*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담당자			
책임자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¹⁾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통보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 사항*			

요구기관 기관장 인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0000.00.00.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감 정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감정위촉연월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사유							
둘 이상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취지·사유					
감 정 에 필 요 한 처 분 의 이 유							
변 호 인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죄 명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감정처분허가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 조치의 대상 과 범 위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혐의 사실의 요지 및 신청 이유							
둘이상을신청하는경우 신청 취지 및 이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취지 ·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통신제한허가기간	부터 까지 일
연장할기간	부터 까지 일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긴 급 검 열 · 감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및 방 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범죄사실의요지및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 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 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 와 집 행 장 소			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장 소	
둘이상을신청하는경우 신청 취 지 및 이 유				
재신청의취지및이유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니 지휘를 요청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및 방 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 청 이 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2. 집행장소 :		
긴급통신제한조치한 사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사전지휘를받지못한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허가 청구한 법원

제 목 : 자료폐기결과 보고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였습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사건번호		
		집행착수시기		
		집행종료시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번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기각 통지일		
폐기의이유				
폐기의범위				
폐기일시				
자료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경과 및 요지				
자료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주체 및 방법				
폐기한 자료 목록		별지와 같음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폐 기 한 자 료 목 록				
연 번	자 료 명	통 신 기 간	자 료 내 용 의 요 지	비 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 종 류		
통신제한조치 대 상 과 범 위		
통신제한조치 기 간		
비 고		

붙 임 :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부터 까지 일
연 장 한 기 간		부터 까지 일

붙 임 : 통신제한조치연장결정문 사본 1통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집행 결과

【사전허가서】

발 부 법 원				
허 가 서 번 호				
허가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통신제한조치 대 상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허가서를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기 간	부터 까지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 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허가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허가법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허가년월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번호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당청 사건번호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조치 집행기관	
전 기 통 신 의 가 입 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와 기 간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
조치 집행사실의 통지 유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및 방 법				
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통신제한조치의 목 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 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회신받을 연락처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 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 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집 행 일 시· 장 소 집행자의관직· 성명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회신받을 연락처	

붙임 : 허가서 1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인)

수사관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사전허가서】

발 부 법 원				
허 가 서 번 호				
허가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가입자의 인적사항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허가서를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기 간	부터 까지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 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법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 요 청 의 종 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연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번호		

< 요청중지사유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당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범위	
사 건 담 당 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게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 유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집행한사건의처리일자및결과				
처리결과를통보받은일자				
통지를유예하고자 하는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 통지

당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범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 요 청 사유	
사 건 담 당 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당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번호	
압수·수색·검증집행기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압 수 · 수 색 · 검 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	
압 수 · 수 색 · 검 증 집 행 대 상 의 범 위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보관 등 승인을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집행종료일			
통신제한조치 집행경위				
취득한결과 의지				
혐의사실의 요지 및 승인신청이유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별지와 같음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 분석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직급·성명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보 관 등 이 필 요 한 전 기 통 신 목 록				
연 번	전기통신 (파일명)	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 용 의 요 지	비 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허가 법원

제 목 : 폐기결과 보고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 12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였습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통 신 제 한 조 치 건 집 행 사 건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집 행 종 료 일		
		전기통신보관 등 승 인 서 번 호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기각) 통지일		
폐 기 의 이 유				
폐 기 의 범 위				
폐 기 일 시				
전 기 통 신 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 행 경 과 및 요 지				
전 기 통 신 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주 체 및 방 법				
폐 기 한 전 기 통 신 의 목 록		(별지와 같음)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폐 기 한 전 기 통 신 목 록				
연 번	전 기 통 신 (파 일 명)	전 기 통 신 기 간	전 기 통 신 내 용 의 요 지	비 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다음과 같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번 호		
대 상 자		
요 청 사 유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의 퇴 사 항 (필요한자료의범위)		
통지유예정보	유 예 여 부	☐ 유예 없음 ☐ 3개월 유예 ☐ 사유 해소시까지
	유 예 사 유	
의 퇴 자		
회 신 정 보	전 화 : 사무실전화번호 :	
	기타(e-mail) : FAX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
고 그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피 의 / 내 사 사 실				

< 처 리 내 용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을 집행하고 그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대상과범위				
피 의 / 내 사 사 실 요 지				

< 처 리 내 용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증거보전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 거 보 전 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증인신문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증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주거						
	소속(직 위)	소속(직위)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수사개시일자	0000. 00. 00.	신 병			
죄 명		죄명						

< 피의사실요지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처리 상황	연 월 일	
	내 용	

< 피의사실요지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1. 송 치 () : (☎:) 2. 이 송 () : (☎:) 3. 수사중지 ()		
주 요 내 용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에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에우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 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소속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1. 송 치 () : (☎:) 2. 이 송 () : (☎:) 3.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		
주 요 내 용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 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불송치 ()		
주 요 내 용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

※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 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 정 종 류	불송치 ()		
이 유	별지 첨부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담당 팀 장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이의·심의신청 등 방법

-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단, 고발인은 무고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에 명시된 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에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이 통지서에 첨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정종류	1. 송 치 () : (☎ :) 2. 이 송 () : (☎ :) 3. 수사중지 () () 4. 불 송 치 () ()
주요내용 및 이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시정조치요구 제도 및 수사중지 이의제기 관련 안내>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소속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 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등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단, 고발인은 무고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에 명시된 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에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 수사청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이 통지서에 첨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병존사건)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사 건 번 호	
죄 명			
결 정 일			
결정종류	1. 송 치 () : (☎:) 2. 이 송 () : (☎:) 3. 수사중지 () () 4. 불 송 치 () ()		
주요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 1301)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민원콜센터 국번없이 000)
 -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

<불송치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불 송 치 통 지 요 구 서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요구 사유		
비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송치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발행번호 제 0000-00000 호

불 송 치 결 정 증 명 서 (고 소 인 · 고 발 인)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의 자		
죄 명		
결 정	년 월 일	
	내 용	
수 사 관 서		
용 도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발행번호 제 0000-00000호

불 송 치 결 정 증 명 서 (피 의 자)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록 민 번 등 호	
	주 소	
죄 명		
결 정	년 월 일	
	내 용	
수 사 관 서		
용 도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호, 0000-00000호

제 목 송치 결정서

아래와 같이 송치 결정합니다.

I .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등록기준지 :

전 화 번 호 :

II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III . 범죄사실

IV . 적용법조

V . 증거관계

VI . 송치 결정 이유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사건송치서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죄명					
수사단서					
사건번호					
체포구속					
석방					
결정일					
결정근거					
증거품					
공소 시효	장기				
	단기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추가송부서

다음과 같이 추가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송 치(송 부) 일	
사 건 번 호	
결 정 일	
추가송부서류 및 증거품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호, 0000-00000호

제 목 불송치 결정서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

I . 피의자

II . 죄명

III . 주문

IV .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다음 불송치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결 정 일	
피 의 자		죄 명	주 문	
송 부 내 역	서 류			
	증 거 품			
공 소 시 효	장 기			
	단 기			
반 환 기 한				

참 고 사 항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불 송 치 결 정 이 의 신 청 서

☐ 신청인

성 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 결정 내용

사 건 번 호	-
죄 명	
결 정 내 용	

☐ 이의신청 이유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 류	서 면 / 전 화 / 팩 스 / 전 자 우 편 / 문 자 메 시 지
-----	---------------------------------------

· · ·

신청인

(서명)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이의신청 기간 연장 허가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건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조 치 사 항	이의신청 기간을 00.00.00까지 연장합니다.	
담 당 자	☎ 00-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귀하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치일시	· · ·	송치번호	-	사건번호	-
조치사항					
담당팀장	☎ 00-0000-0000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목적 수사 관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	☐ 고소인 본인 ☐ 고소인의 법정대리인				
	과의 관계	☐ 고발인 본인 ☐ 고발인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사 건	사건번호			피의자		
				외 명		
		죄 명				
신청내용		※ 신청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기재 가능				
신청사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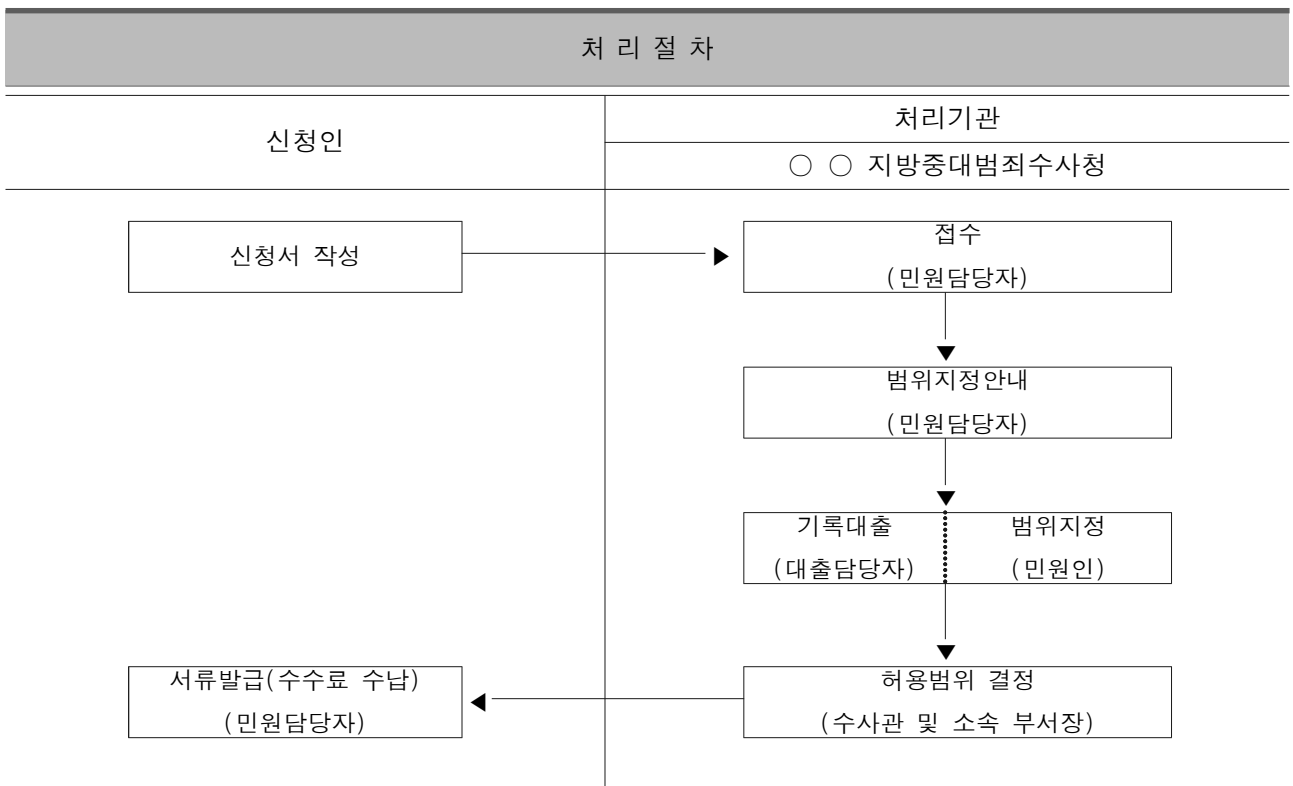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결정	수사관				소속 부서장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목적제한 또는 조건부가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열람 · 등사 신청 내용

열람 · 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불허가 · 조건부가 · 사용목적제한 사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 및 제59조의2 제2항)

①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③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④	피의자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
⑥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
⑦	그 밖의 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사유

결정
내용

신청 내용	결정 내용	부가조건 · 사용목적제한 사항	사유
○○서	불허가		①
○○서	조건부가		②
○○서	사용목적제한		③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 및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허가 · 조건부가 또는 사용목적 제한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호, 0000-00000호

제 목 수사중지 결정서

아래와 같이 수사중지 결정합니다.

I. 피의자

II. 죄명

III. 주문

IV. 피의사실과 수사중지 이유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

다음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결 정 일	
피 의 자		죄 명	주 문	
송 부 내 역	서 류			
	증 거 품			
공 소 시 효	장 기			
	단 기			
반 환 기 한				

참 고 사 항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

피의자 000외 0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재수사를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소재 확인 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주거지 :

주 소 :

등록기준지 :

배회처 : 1.

배회처 : 2.

1. 연고지 거주 여부(소재수사결과)

1) 최종주거지 :

2) 주 소 :

3) 등록기준지 :

4) 배회처 :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6. 기타 참고사항(고의적인 출석불응 여부 등)

수 사 중 지 결 정 이 의 제 기 서

☐ 신청인

성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결정 내용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	수사중지 ()

☐ 이의제기 이유

신청인

(서명)

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

귀하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사건번호	
처리결과	
이유	

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

참 조 : 참조

제 목 :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건의 수사를 재개합니다.

1. 사건번호

2.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등록기준지 :

3. 죄명

4. 수사중지 유형

5. 수사중지 해소의 구체적 사유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항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합니다.

소재발견 대상자	성 명	
	사건관련신분	
	주민등록번호	
	주 거	
	전 화	
대상 사건	사 건 번 호	
	송 부 일 자	
발 견 경 위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사건이송서

다음 사건을 이송합니다.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사 건 개 요			
송부내역	서 류		
	증 거 품	품 명	수 량
이 송 사 유			
기타참고사항			
범죄통계원표	발 생	검 거	피 의 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수사 결과를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이행 기간		
보완수사요구 내용		
종합수사 결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별첨첨부】

【1. 피의자 인적사항 】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4.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결과와 증거관계 】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이행기간		
연장신청 기간		
보완수사요구 내용		
기간 연장 신청 사유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제6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이행기간		
보완수사요구 내용		
기간 연장 미신청 및 보완수사 결과 미통보 사유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보완수사요구 내용		
보완수사 결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검사: 검사명)

제 목 : 재수사 결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재수사 요청 내용				
재수사 결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건기록의 등본을 송부합니다.

사 건 번 호	
요 구 일 자	
요 구 번 호	
사건기록등본 송부 관련 의견	
붙 임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요구 일자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시정조치요구 내용			
이행 결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사건 이송 통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송부내역	서 류		
	증 거 품	품 명	수 량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기 타참고사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인지 통보 요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한 인지통보를 요청합니다.

대 사 상 건	접 수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000등 0명
요 사 청 유		
비 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인지 통보 사건 자료제출 요청

귀 기관에서 인지 통보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대 사 상 건	접 수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000등 0명
	인 지 통 보 접 수 일	
제 기 출 한		
요 자 청 료		
요 사 청 유		
비 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수사개시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인지 통보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합니다.

대 사 상 건	접 수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000와 0명
	인 지 통 보 접 수	
수 개 여	사 시 부	개시 / 불개시
사 유		
결 정 일	정 자	
비 고		

중대범죄수사청장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통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귀 기관에서 인지 통보한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의 회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대 사 상 건	접 수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000와 0명
	인 지 통 보 접 수 일	
연 기 장 한		
연 사 장 유		
비 고		

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이첩 요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오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사 건	접 수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0000외 0명
귀 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		
송 부 기 한		
비 고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이첩 요청 검토 사건 자료제출 요청

귀 기관에서 인지 통보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대 사 상 건	접 수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000외 0명
제 기 출 한		
요 자 청 료		
요 사 청 유		
비 고		

(○ ○ 지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사건이첩

다음 사건을 이첩합니다.

접 수 번 호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사 건 개 요			
송부내역	서 류		
	증 거 품	품 명	수 량
이 첩 사 유			
기 타 참 고 사 항			
범 죄 통 계 원 표	발 생	검 거	피 의 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의견요청서(중요사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의견서(중요사건·협의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관한 검사 (검사명)의 (의견·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협의요청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협의 요청 사항과 그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협의요청서(청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사건 담당자 협의 사항

청장 협의 요청 사항과 그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의견요청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의견 요청 사항과 그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피의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기소중지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참고인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참고인종지한 사건의 참고인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참고인등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전 화	(자택)		(직장)		
대상사건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귀청에서 요청한 소재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소재 확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분						
	직	업						
	주	거						
	전	화	(본인)		(직장)			
대상 사건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일	자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소재 확인 결과								
비			고					
첨			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처

제 목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였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 속			
	직위(직급)			
죄	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비 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몰수·부대보전 신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
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피 의 사 실 의 요 지		
몰수 부대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몰수 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 무 자 의 성 명 · 주 소	
	몰수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대 보전 관계	몰 수 보 전 사 건 의 표 시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부대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추정보전 신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추정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추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추정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추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정보전명령의 (전부·일부) 취소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추정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취소 대상		[] 전부취소 [] 일부취소
일부취소 시 범위		(기존 추정보전액: 원) 취소신청 추정보전액: 원 잔여 추정보전액: 원
추정보전명령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제 목 :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제61조제3항·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징계요구 요지			
처리 결과			
이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제 호

수 신 :

제 목 :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제2항 ·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

사건 번호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직무배제요구 요지			
처리 결과			
이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	[] 피의자 본인 [] 피의자의 변호인 [] 피의자의 ()
	과의 관계	[] (피해자 / 참고인) 본인 [] (피해자 / 참고인)의 변호인 [] (피해자 / 참고인) 의 () ※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위한 문서 첨부 필요

사 건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외 명

신청내용	[]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거나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 []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 []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 (피의자 측인 경우에 신청 가능, 신청사유 소명 필요) [] 현행범인체포서·긴급체포서·체포영장·구속영장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인 경우에 신청가능) ※ 세부 신청 내용은 별지에 기재
------	--

신청사유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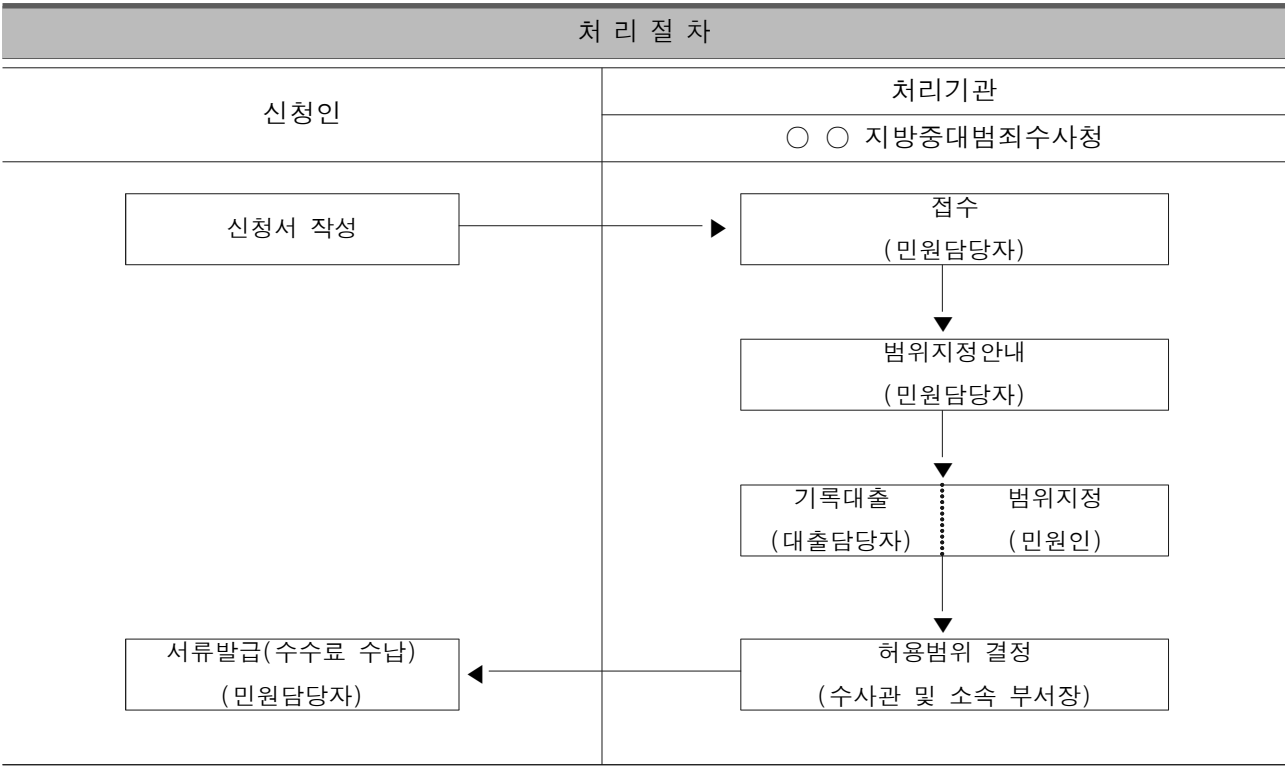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결정	수사관			소속 부서장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인	인	인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열람·복사 신청 내용

[]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거나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

1. 열람·복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

1. 열람·복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 (피의자 측인 경우에 신청 가능)

1. 열람·복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2. 열람·복사가 필요한 사유

-

3. 열람·복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 현행범인체포서·긴급체포서·체포영장·구속영장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인 경우에 신청가능)

1. 열람·복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목록(내용)

-

수사서류 열람·복사 불허가 통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불허가 사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

- | | |
|---|------------------------------------|
| ① |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이 아님 |
| ② | 서류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 ③ | 서류의 공개로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음 |
| ④ | 기타 위 사유들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정 내용	불허가 대상 수사서류 내역	불허가 사유
	○○○서	①
	○○○서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

수 사 심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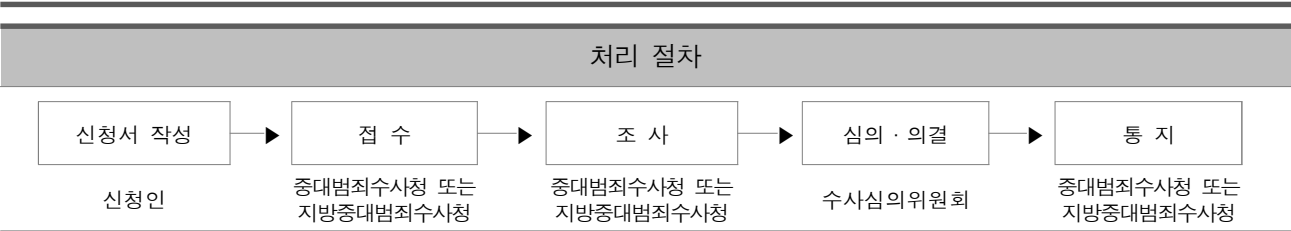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피조사자 [] 진정인 [] 피진정인 [] 변호인 [] 대리인 [] 기타()		
대상 사건	담당관서 사건번호 제 - 호	피의자 외 명	
	죄 명		
심의신청 사유	[] 입건 전 조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 기타()		
	※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결과 통지방법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그 밖의 방법()			

신청인은 위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수 사 심 의 위 원 회 의 결 서					
심의대상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 사건 []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건 [] 주요 수사 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내용	※ 별지 활용 가능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결과					
심의이유	※ 별지 활용 가능				
참석대상	15명	참석위원	〇〇명	불참위원	〇명
구 분	성 명	서명 또는 인	구 분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

수신: 신청인 귀하
(경유)

제목: 심의 결과 통지

귀하의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 .
사건번호	제 0000-000000 호
심의일자	. . .
심의결과	
담당자	○○○과 수사관 ○○○ (유선) 000-0000-0000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중대범죄수사청사건사무규칙[별지 제22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보 상 금 지 급 청 구 서 ([]신규, []추 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음 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발생 일시 및 장소			
	손실내용 및 청구이유			
구 분	[]물건의 멸실·훼손 손실 []그 외 재산상 손실 []생명·신체 손실			
신청액	손실액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보상금 지급 결정 시 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 지급 신청 (사유:)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결정 통지방법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의 방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뒤쪽)

첨부서류					
구분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예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재 산 상 손 실	물건의 멸실 · 훼손	수리비	1. 수리견적서 또는 영수증과 그 내역서 2. 출입문 등 주택 파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 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자동차등록증
		교환가액	교환 물품의 구매영수증 등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멸실 · 훼손 외 손실	상당인과관 계 있는 손실	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 명 · 신 체 손 실		사망	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해 · 상해	장해 · 상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등),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약제비 등 의료비 영수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 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중대범죄수사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실확인, 통지, 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처리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신청을 위임해야 합니다.
3.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이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손실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 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이 송 중대범죄수사청장	➔	심의·의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결정서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	---	-------------------	---	-----------------	---	--------------------	---	--------------------

보 상 금 지 급 청 구 승 인 통 지 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

보 상 금 지 급 청 구 [] 각 하
[] 기 각 통 지 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 각 하
[] 기 각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